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관내 아동가정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건강.교육.문화 활동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FAX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양육가정 지원”이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양육가정의 건강·교육·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아동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건강·교육·문화 활동 지원 사업
2. 그 밖에 아동양육가정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동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아동 양육 가정의 건강·교육·문화 활동 등의 양육부담 경감 목적에 따라 사용 가맹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아동양육가정 지원은 구청장에 대한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청장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기관정보를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아동양육가정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